



주 요 업 무 보 고

2023. 11.

재 무 국

I. 일 반 현 황

조직 · 인력 6과 33팀 238명/222명 (정/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별도(재무과3, 38세금징수과6)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재 산 관 리 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증 감		
丁 正	2023년	2022년(최당)	금액	비율	
합 계	27,721,761	29,265,157	△1,543,396	△5.3%	
시 세	24,112,184	23,095,574	1,016,610	4.4%	
세 외 수 입	353,209	296,809	△56,400	19.0%	
보 조 금	1,511	1,539	△28	△1.8%	
보 전 수 입 등	3,254,857	5,871,235	△2,616,378	△44.6%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 н	FLOOD	000011/1 5 \	증 감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금액	비율	
합 계	3,249,714	3,455,855	△206,141	△6.0%	
인 력 운 영 비 (통합 편 성)	815,591	792,041	23,550	3.0%	
기 본 경 비	2,103	2,044	59	2.9%	
 재 무 활 동	16,443	15,499	944	6.1%	
사 업 비	2,415,577	2,646,271	△230,694	△8.7%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550	1,743	△193	△11.1%	
국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5,351	12,034	13,317	110.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8	35	△7	△20.0%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08	1,761	47	2.7%	
시세입 목표달성	5,100	19,464	△14,364	△73.8%	
조세정의 실현	6,463	6,958	△495	△7.1%	
타 기관 지원	2,375,277	2,604,276	△228,999	△8.8%	
자치구 재정보전금	1,790,746	1,959,075	△168,329	△8.6%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	640,196	△58,308	△9.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43	5,005	△2,362	△47.2%	

재 산 현 황(市)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 ы		토 지	건 물		
구 분	필 지	면 적 (천 <i>m</i> ²)	동 수	면 적 (천 <i>m²</i>)	
합 계	57,560	106,434(100.0%)	69,989	13,277 (100.0%)	
행 정 재 산	55,500	105,028 (98.7%)	6,232	5,660 (42.6%)	
일 반 재 산	2,060	1,406 (1.3%)	63,757	7,617 (57.4%)	

Ⅱ. 정책목표 및 방향

안정적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실

천

业

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u>및</u> 재정 운용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 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市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 2.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총력체계 운영
- 3. 시 직접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4.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 1. 주택 공시가격 사전검증 및 국토부와 협력사업 추진
- 2.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 운영
- 3.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 1. 맞춤형 계약심사로 설계품질 향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 3.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
- 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정 책 과 제

Ⅲ. 주요 업무보고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 ※ 별도보고(한국지방세연구원)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1-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市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1-2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총력체계 운영

1-3 시 직접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1-4 제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1-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市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 세입징수로 '23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 시세목표 : 24조 1,122억원 (전년대비 1조 166억원↑, 4.4%↑)

(단위: 억원, %)

구분	2023	년 8월 실적((누계)	전년동기 실적대비		
세목	목표(A)	징수액(B)	진도율(B/A)	징수액(C)	증감액(D B -C)	증감률(D/C)
합 계	241,122	154,723	64.2	180,141	-25,418	-14.1
취 득 세	52,219	31,532	60.4	43,140	-11,608	-26.9
재 산 세	35,221	10,877	30.9	12,677	-1,800	-14.2
지방소비세	27,869	19,638	70.5	20,539	-901	-4.4
지방소득세	79,339	63,129	79.6	71,994	-8,865	-12.3
기타 시세	46,474	29,547	63.6	31,791	-2,244	-7.1

□ 추진내용

- o 사·구 협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합동 징수대책회의 및 공동워크숍 개최 (5월 6월 10월)
- o 가족간 부동산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 (169백만원 추정)
- ㅇ 법인이 취득한 매입 부동산 신고내역 일제조사 (1,119백만원 추징)
- o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누락 세원 차단(주택 374만전, 건축물 10만전, 차량 153만전 등 정비)
- ㅇ 25개구에 합동신고센터 설치(10,698명 방문), 145만건의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총 640건, 477억원 추징 ※ 주요 추징사례 : 법인중과, 과표·신고 누락, 감면착오, 세율착오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하아	지혜르(0/)	'23년말 갑	집행예상액
사립당	메진연백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081	441,165,391	75.8	539,126,551	92.7

별첨1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지방세제 합리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o <u>자동차세 주행분*</u>은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인하 등에 따른 <u>세수보전</u> 재원으로 우선 배분 후, 나머지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활용
 - *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의 26% 괴세, '00년 주행세로 신설 후 '11년 자동차세 통합
 - · 세수보전분은 전국 9,830억원을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결산)에 따라 지자체별 안분 배분
 - · 유가보조금은 당월 징수액에서 세수보전분 공제 후,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안분
- o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보전분(전국 9,830억원)은 약 20년간 정액으로 고정되어 승용자동차 보급량 증가 등에 따른 확대된 재정수요를 미반영
 - '00년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1,206만대 → '22년 등록대수 2,550만대 (2.1배 증가)
- 유가보조금 부분은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특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 성격임에도 지방세기본법에서 보통세로 규정
 - 유가보조금 외 해당 재원의 36%(교육청전출금, 조정교부금)를 별도 지출

□ 추진내용

- ㅇ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3. 9. 8.
 -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지하 1층)
 - 참 석 : 발제자 유태현 부원장 외 토론자 6명 등
 - 주요내용: 자치단체 세수손실 규모를 감안하여 세수보전분 현실화 및 유가보조금은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목적세 전환이 타당 ※ 서울시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예산('23년): 4,100억원



- o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방안 미련, 지방세관계법 개정 건의(행안부) : '23. 9. 26.
 - (세수보전분) 전국 9,830억원 → 4.7조원¹⁾ 규모로 현실화(서울시 + 5,434억원 효과)
 - (유가보조금) 특정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므로 보통세 → 목적세로 전환 필요

□ 향후계획

ㅇ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 공조. 대정부 설득 및 협의를 통해 개선

^{1) &#}x27;23년 서울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기준, 자동차세(소유분) 등의 세수보전분(6,883억원) 모의계산 후 전국 규모 추계

별첨2 시·구 합동 시세입 종합징수대책 회의 ('23.10.12)

- □ 어려운 세입여건과 동향을 자치구에 설명 후 협력 요청
 - o (참석) 25개 자치구 국장, 과장 등 총 53명
 - ㅇ 8월까지 징수액 및 세목별(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부진사유 설명
 - ㅇ 우리시 세입 추진 주요사안 등 공유. 방향 설명 및 향후 협조내용 부탁

□ 세입징수를 위한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ㅇ (중 구) 전직원 대상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세입증대 기여
- o (용산구) 재산세 1, 2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대응하여 대법원 승소
- ㅇ (광진구) 휴면법인을 금감원 등 자료 조사 후 취득세 중과한 사례 공유
- ㅇ (마포구) 민원안내 도우미 호출 등 시민서비스 개선 및 법인 조사 등
- ㅇ (영등포구)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신고분 전수 조사로 93백만원 추징
- ㅇ (서초구) 최근 임금인상에 착안하여 특별 기획조사로 1,459백만원 징수







□ 향후계획

- ㅇ '23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지도 점검 실시
 - **(시기)** '23.10.16.~11.17. (방법) 현장점검
 - (주요내용) 국세청 통보자료 점검, 안분신고 여부, 정산 및 개선사항
- ㅇ 하반기 세외수입 정리기간 후속 조치 및 우수사례 전파
 - (시기) '23. 9.11. ~ 10.27. (대상) 본청 및 사업소 8개
 - (주요내용) 체납 압류여부, 부과적정성, 독촉장 고지서 발송여부 점검 등

1-2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총력체계 운영

서울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한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부서별 징수컨설팅을 추진하여 '23년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세외수입 목표 : 1조 3,351억원

(단위: 억원, %)

		2023	년 8월 실적	(누계)	전년동기 실적대비		
세목		목표(A)	징수액(B)	진도율(B/A)	징수액(c)	증감액(D B C)	증감률(D/C)
훁	· 계	13,351	8,322	62.3%	8,139	183	2.2
경	상 적	7,849	4,969	63.3%	4,858	111	2.3
임	시 적	5,425	3,305	60.9%	3,210	95	3.0
행 부	정 제 재 과 금	77	48	62.3%	71	-23	-32.4

□ 추진내용

- o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 징수대책 회의 개최('23.6월)
 - 100억원 이상 실·국·본부별 징수전망 분석 및 세입목표 징수대책 보고
- o 체납정리 기간 운영 및 적극적 징수활동 추진('23.5~12월)
 - 과태료 감치예고 통지서 송달(소관부서) : 326명 송달, 체납 34백만원 징수
 - ※ 감치 대상자 : 시·구합산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인 납부능력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 시 40명, 구 792명 (^{23.11}월)
- ㅇ 납세자에게 문자로 부과, 체납 등 안내사항 SNS발송 및 고지서 병행 전자 송달
 - 장문자(LMS) 257천건, 단문자(SNS) 0.5천건, 카카오톡 7.5천건 (총 265천건)
 - 이메일(부과·체납) 28.2천건, 모바일 앱(부과) 13.8천건, KT(환급·체납) 77.2천건
- ㅇ 세외수입 법령 및 세외수입 시스템 교육 실시 : '23.4~9월, 3회 368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TI어대	에지들에	지하아	지혜르(0/)	'23년말 김	짘행예상액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16,660	455,402	49.7	904,437	98.7

1-3 시 직접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효율적인 전산정보 활용과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워발굴 목표 달성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

- □ '23년 세원발굴 목표 : 750억원(시 450억원, 자치구 300억원)
 - o (市) 목표 상향 : ('22) 400억원 → ('23) 450억원, 50억원 증가
 - ㅇ(區)최근 3년 평균 250억원 징수, 금년에는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추진내용

(단위: 억원, %)

연도별	지스모ㅠ(시)		진도율		
한포털	징수목표(시)	합 계	직접조사	지도점검	신工될
2023. 9월	450	565	88(진행중)	477	126
2022년	400	540	350	190	135
2021년	300	621	421	200	207
2020년	320	272	121	150	85

- o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한 세원 누락 방지(2~5월)
 - 14개 자치구(25개 자치구 격년제 실시) 현장 출장으로 지방세 세원 누락 여부 점검(취득세 등 640건, 477억원 추징)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적정부과 여부 등 점검
 - 세무조사 실무책자 발행 및 교육으로 세원발굴 사례 공유 등 조사역량 강화
- o 市 직접 법인 세무조사로 철저한 세원관리(6~12월)
 - 50억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비과세·감면 1억원 이상 등 市 직접 세무조사
 - 조사대상 50개 중 26개 법인 조사 완료, 24개 법인은 추가조사 예정 ※ 취득세 등 88억원 추징 완료('23.9월 기준)
 - 전산자료 활용 및 시·구 합동 조사로 세무조사 다각화
- ㅇ 시 세무조사 직접 부과 시세의 철저한 불복 대응으로 시세 누출 차단
 - 조세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자와 공동 대응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사업명	에까워에	지하이	지하므(0/)	'23년말 김	짘행예상액
사람당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00,000	24,200	24.2	100,000	100

1-4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시·자치구 협업과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징수목표 조기 달성

□ '23년 체납 징수목표 : 2,137억원

o 8월말 1,971억원 징수(목표대비 92.2% 달성, 전년동기 66억원 추가 징수로 역대 최고)

□ 추진내용

- o 1억원 이상 체납자 833명을 선정, 집중관리제 도입(5월~)
 - 팀별 월 2회 체납자 조사내용과 징수 노하우 공유하여 다각도 징수기법 제언
 - 집중관리 결과: 체납자 189명, 8,018백만원 징수
- ㅇ 시·25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납징수 강화(1~9월)
 - 전국 최초 서울세관과 공조하여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실시(6월)
 - 시·구단속(3월): 영치683, 견인17 / 경찰청·도로공사 톨게이트 단속(6월): 영치239, 견인2
 - 區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채권 市 조사(1~9월): 예금 8,654건 제공, 57억원 징수 / 공탁금・보관금・경매사건・분양권 22,995건 제공, 181억원 징수









- o 압류재산의 촘촘한 재검토로 체납 채권 소멸방지(1~9월)
 - 실태조사단(뉴딜일자리 3명) 1,388명 안내문전달 및 조사: 95명 597백만원 징수(3~9월)
 - 시효 경과한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7건, 소가 857백만원
 - 장기압류 금융채권 1,941건 조사(실익분석, 추심, 선순위 조사 등): 63명, 542백만원 징수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エルション	지혜르(0/)	'23년말 집	<u> </u>
사람당	메진연백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고액체납 시세 징수	618,320	486,221	78.6	618,320	100.0

별첨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징수현황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등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추진배경

o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 적극 대응

□ 추진방법

- ㅇ 무재산 체납자의 가족재산 형성과정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추적
- o 상속재산을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이전 등기하거나 미등기한 재산을 찾아내어 반환소송 제기 및 상속 미등기 대위등기 실시
- ➡ 추진내용: 사해행위 취소소송 302백만원, 대위등기 551백만원 징수
 - o 사해행위¹⁾ 취소소송(반환소송)
 - (실적) 상속포기자 납부안내(16건) 및 사해행위 소송(6건) 추진: 302백만원 징수
 - (사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등기함과 동시 증여하거나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조세채권을 회피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o 상속 미등기 대위등기²⁾
 - (실적) 미등기 부동산 대위등기 후 체납처분 추진: 21건, 551백만원 징수
 - (사례) 체납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되는 미등기 부동산을 찾아내어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 추진

□ 기대효과

- ㅇ 재산은닉행위자 추적조사 강화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 o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¹⁾ 사해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률 행위

²⁾ 대위등기: 채무 회피를 위해 채무자가 미등기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대신하여 하는 등기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2-1 주택 공시가격 사전검증 및 국토부와 협력사업 추진

2-2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 운영

2-3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2-1 주택 공시가격 사전검증 및 국토부와 협력사업 추진

정부 산정 주택공시가격_(표준·공동)을 우리시가 검증하여 정부에 의견제출하고, 국토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

□ 추진 목표

- o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성 확대(서울 공동주택 '22년 14.2%↑, '23년 △17.3%↓) 및 주택 유형별·가격대별 차등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공시가격 불균형 초래
- 공시가격은 재산세 부담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결정 과정에 지자체 역할 배제, 현장에 밀접한 지자체 역할 확대로 공시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 추진 내용

- o 표준주택 공시가격 선제적 검증 실시 및 의견제출 (시→국토부·부동산위)
 - 주택특성 변경, 공부와 특성이 상이 주택 등 118건 재검토 요청, 50건 반영(1월)
- o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구 합동 검증 및 의견 제출 (시→국토부·부동산원)
 - 취득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구별 표본 아파트간 형평성 검증 후 289건 의견제출(4월)
 - '23년도 신축 공동주택 가격 및 충별 효용비 적정여부 등 2개 단지 검토 후 의견제출(7월)
- ㅇ 지자체 최초로 국토부와 공시가격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체결('23. 9.)
 -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시에 검증센터 설치 협력사업 제안(8월)
 - ▶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검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실태조사용역 등 공동이행
 - 우리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수행 예정(10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иlоны	에사택애	지하아	지해르(0/)	'23년말 집	집행예상액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실태조사	50,000	0	0	50,000	100

별첨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방안 및 주요 반영내용('23.10.15)

□ 추진경과

- ㅇ 공시가격 관련 지자체 역할 확대 및 검증센터 설치 건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2. 4.), 국토부 전문가 자문회의 ('22. 6. ~ '23. 8.)

□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관련 주요 내용

- ㅇ 공시가격 산정인력 2025년까지 33% 확대로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
- ㅇ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로 보다 철저한 검증
- ㅇ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 등급체계 마련·공개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

□ 우리시 관련 주요 반영내용

- o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이의신청의 1차적 검토를 포함하여 공시가격 산정 전반을 상시 검증 기능 수행
- 검증센터 단계적 추진: 설치준비('23년) → 시범사업('24년) → 확대운영('25년)
- 지자체의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 검토기능 확대(시·군·구 부동산공시위원회 활용)
- ㅇ 주택 특성 변화를 수시 갱신하는 재산세 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
- ㅇ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온라인 상시 교육 제공
- ㅇ 지자체와 납세자에게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 및 관련 통계 등 제공

□ 향후계획

- ㅇ 서울시-국토교통부 공동협력사업 추진 ('23. 9~)
- 지자체 최초로 국토부와 공시가격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체결('23. 9.)
- ㅇ 국토부는 '24년에도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협력사업 계속 추진
- 국토부 '24년 관련 예산 606백만원 반영(1개 시·도당 인건비 300백만원, 경비 3백만원)
- ㅇ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 중앙정부는 표준부동산 조사·산정, 기초지자체는 개별부동산 조사·산정, 광역지자체는 검증센터를 통해 표준 및 개별부동산의 검증·조정 역할 수행

2-2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 운영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 지원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개인회생 지원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3. 3월 ~ 12월

ㅇ 추진내용 :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ㅇ 사업개선 : 방문 횟수 및 방문 기관 확대 운영

구 분	2022년	2023년		
	7회	36회 (복지관:10회, 전통시장:26회)		
방문기관	복지관(2개소)	복지관(4개소), 전통시장(26개소)		

□ 추진내용

- ㅇ 자치구 및 市 유관부서를 통해 세금상담 수요대상 기관 파악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상담수요가 있는 복지관 4개소와 전통시장 21개소 확정(2월)
 - 상권활성화담당관과 협의, 상담수요가 있는 전통시장(인왕시장 등) 5개소 추가(5월)
- ㅇ 복지관과 전통시장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실시
 - 세무사가 현장 방문, 시민들의 국세·지방세 등 세금 궁금증 해소 및 세금 고민 해결
 - 17개소(복지관 4, 전통시장 13) 대상 20회 실시 완료, 총 146명 상담(3~9월)
 - ※ 자치구 추가수요 반영, 아파트·이동보건소 등 찾아가는 세무상담 추가실시 6회, 55명 상담



- o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대상 세금 전문교육 실시(8월)
 - 복지센터 상담사의 세무분야 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개인회생자 신용회복 지원
- 리플릿(12,000패) 제작·배포, 보도자료 및 소식지 배포, 전광판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o 복지관·전통시장 대상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지속(11~12월)
- o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대상 추가 교육 실시(12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HOID	예산현액	집행액	지테르(0/)	'23년말 집행예상액			
사업명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마을세무사운영	12,740	10,433	81.9	12,740	100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

IT기술의 발전. 스마트폰 기기의 대중화. 고령화 사회 등 시민 생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

ᄀ 추진내용

- ㅇ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 추진을 위한 집중신청기간 운영(5~11월)
 - ETAX·STAX 첫 화면에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배너 고정 등 신청편의 제공
 - 전자송달 140천명/228천건, 자동납부 230천명/300천건 증가 (²³. 9월 말 기준)
 - 신청자 커피쿠폰 이벤트(총 7만명), 현수막 게시, 서울시 SNS 등 적극 홍보 추진
- o Al활용 지방세 수기납부서 자동화 판독시스템 확대 실시 (7월)
 - '23년 7월 25개구 전면 확대 실시로 수납 처리기간 단축 (14일 → 2~3일)
 - 지방소득세 52,998건, 주민세(종업원분) 1,627건 ('23, 9월 말 기준)

< 수기납부서 데이터 변환 과정 >



- ㅇ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스퀘어」서비스 고도화 추진
 - 1단계 시범사업 개시 ('23. 1.16). 2단계 고도화사업 추진 중 ('23.11월 개시 예정) ※ 방문건수 9,035건, 상담건수 1,908건 ('23. 9월 말 기준)
 - TaxGPT에게 물어봐, 세무지식O/X퀴즈, 자동차 가상구매 등 시민참여 콘텐츠 10종 개발



세금 조회/납부

Tax-GPT에게 물어봐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 ㅇ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로 변경하는 어르신 동행 고지서 디자인 혁신 추진
 - 글씨크기 확대(8→16~23포인트), 중복내용 정리, 개조식 설명으로 시인성 증대
 - 3개 세목(자동차, 재산세, 주민세) 8종 디자인 개선하여 총 16.070천건 발송
 - 언론보도 4회, 서울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 결과 97.2% 개선 만족 의견
- ㅇ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도입 : 별첨

별첨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도입

□ 추진개요

- o 추진배경: 3차 우수 창의제안 선정(사이다상 수상. '23.8)
 - 주소 변동이 잦은 내외국인 및 해외장기 체류자에게 체납 안내 곤란
- 소액체납에 효율적인 체납 안내 및 징수 방안 필요
- ㅇ 서비스 내용
 - (과세기관) 체납내역을 납세자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안내
 - (납세자) 본인인증 후 ETAX와 연계하여 체납상세내역을 열람 및 즉시 납부
- ㅇ 서비스 개시: 2023. 11월

□ 추진내용

- ㅇ 서비스 구축
 - (연계정보(CI) 변환) 체납이 있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
 - (시스템 연계) 체납정보 및 체납안내 발송내역, 수납이력 등 송·수신 하기 위해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시스템과 세무종합시스템 연계
 - (프로그램 제작)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수신한 체납정보와 CI를 매칭하여 CI가 일치하는 카카오 회원에게 발송하고 발송결과 및 수납내역 관리
- ㅇ 사용자 교육 ('23.10.17)
 - (대상) 시 및 자치구 체납담당자 92명
 - (내용)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사용법

< 스마트폰 체납안내 화면 >



□ 기대효과

- o (비용절감) 고지서 제작비 3억원, 우편발송비 7억원 절감(^{22년 체납}건 30% 시행 기준)
- o (친환경 동참) 탄소배출 13톤 감소, 나무 1470그루 심는 효과
- ㅇ (세입효율증대) 소액체납자, 주소불명확자, 외국인 등 안내로 징수 증가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맞춤형 계약심사로 설계품질 향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3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

3-1 맞춤형 계약심사로 설계품질 향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서울시의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심사제도 활용으로 조기발주 지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계약심사 개요

o 대상기관: 시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o 대상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공사		용역	무프 제국.그메	민간위탁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5 7	물품 제조·구매	(사무, 시설 위탁사업)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금액제한 없음	

□ 추진내용

o 9월말 기준 2,880건 2조 4,971억원 심사, 926억원 절감(조정률 3.7%)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기액	조정액	조정률
합	계	2,880	2,497,052	2,404,414	92,638	3.7%
공	사	1,299	1,597,289	1,532,461	64,828	4.1%
용	역	287	267,686	259,079	8,607	3.2%
구	매	1,168	390,058	377,166	12,892	3.3%
민간	위탁	126	242,019	235,708	6,311	2.6%

ㅇ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약심사제도 운용

- (집중심사기간) 상반기 집중심사(공사·용역·구매)로 평균 3.0일 이내 처리
- (사전검토제) 계약심사 前 269건 사전검토로 심사기간 단축
- (유사사업 통합심사) 8개 유형 214건에 대한 통합심사 실시

ㅇ 품셈개발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소방품셈 개발) 시민안전에 필요한 시각경보기 등 10종 개발(1~6월)
- (원가계산 교육) 원가계산 실무집합교육 실시(5~8월, 11회 1,145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3년말 집행예상액			
<u> </u>	16		예상액	집행률(%)			
계약심사 업무추진	28,200	21,150	75.0	28,200	100		

별첨 다양한 계약심사제도 운용으로 주요사업 신속발주 추진

□ 상반기 집중심사기간 운영

o (내용) 발주가 많은 상반기, 신속 사업집행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 단축

< 대 상 >		< 현행기준>		< 추진목표 >
공사·용역·구매	:	10일 이내 처리	→	3일 이내 처리

o (실적) 상반기 공사·용역·구매 분야 평균 처리일 3.0일로 신속심사

□ 공사분야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실시

o (내용) 발주부서 요청시 계약 사전절차 진행중에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를 병행하여 서류보완 등 처리지연 방지



o (실적) 공사분야 1,299건 중 사전검토 269건 실시, 보완요청비율 53% 감소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

- o (내용) 기관별로 분산 발주하는 유사·반복사업 대상으로 발주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통설계기준 마련, 일괄신청기간 조정 및 심사
- o (실적) 8개 유형(사업별 6~43건) 총 214건 통합심사, 평균 처리일 2.3일

□ 시민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품셈 개발

(내용) 소방시설 규정 강화 및 안전시설 증가 추세에 맞춰 유관기관 협의·합동 현장실사 등을 통한 품셈 개발



o (실적) 자문회의(4회), 유관기관 협의(2회), 합동 현장실사(5회) 통해 소방품셈 10종 개발

음성점멸유도등

□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 o (내용) 발주부서 직원의 설계역량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설계오류사례 등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
- o (실적) 10개 분야 11회 교육 실시 1,145명 참석, 4분기 9회 추가실시 예정
 - 다양한 계약심사제도 운용으로 주요사업의 신속발주를 지원하고 품셈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서울시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서울계약마당」에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 추진내용

- ㅇ 계약분야 규칙 및 제도 개선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 위원 위촉자격 및 제척기준 명확화, 서면심사 근거 마련 등(4월)
 - · 위원 위촉요건 추가 및 보안각서 제출규정 보완, 소수점 처리방법 통일(10월)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5월~)
 - •기존 관행적인 종이 출력 및 도장 날인을 생략하는 등 계약과정 전면 전자화
 - 퇴직공무원과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9월~)
 - 퇴직 직전 2년이내 근무했던 실·국·본부·사업소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확대)
 - · 유착비리 적발업체로 지정된 경우 2년간 수의계약 금지(신설)
 - 「협상에 의한 계약」가산점 폐지를 통한 우수업체 선정 기반 마련(10월~)
 - 정량적 평가(20점)와 관련된 가감점(7점~△7) 일괄 폐지
- o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9월말 기준 총 10회 개최, 85건 심의(발주방법 70건, 부정당제재 11건, 과징금 등 기타 4건)
- ㅇ「서울계약마당」에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단계별 정보 제공
 -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마당에서 통합관리·공개 및 실적증명서 발급(총 9,227건 발급)
- ㅇ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및 「한눈에 보이는 서울계약」 동시 제작·배포(5월)
 - 사업·계약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달라진 계약제도 등 교육 실시(9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하이	지혜르(0/)	'23년말 집행예상액			
사립경	메산연액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9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149,218	73,000	48.9	147,600	98.9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037	18,500	68.4	27,037	100		

별첨 계약분야 규칙 및 제도 개선 세부내용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2회)

4월	10월
• 행안부 예규에 부합토록 위원회 성원 위원수 개정	• 평가위원 위촉대상에 건축사 추가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 가능 → 7인 이상 출석)	• 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안각서 제출대상을 최종
● 평가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추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 명확화(20% 이내 → 2명 이상) 	•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행안부 예규에 통일 등
● 서면심사 근거 규정 신설 등	(소수점 셋째자리 → 소수점 다섯째자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 (5월~)

- ㅇ 현행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기결재 생략하고 전면 전자결재화
 - 업무관리시스템 및 e-호조를 활용, 관행적인 서류출력과 도장날인 생략
 - 문서 보관 · 정리에 따른 직원의 업무증가 완화 및 보관장소 부족 해소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복사용지 99만장 절감 효과 발생
- ㅇ '종이없는 계약행정' 조기안착 위해 시행착오 최소화 조치
 - 각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 우려사항 해소, 필수절차 누락방지를 위한 계약담당자용 체크리스트 배포 및 재무과 시범실시 후 전 부서 확대로 단계별 시행

■ 퇴직공무원과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9월~)

ㅇ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1인수의 자격요건 강화

구 군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범위 확대
유착비리 적발업체 수주 제한

종 전	
퇴직일로부터 2년간 근무 부서(과단위)와 수의계약 금지	
< 신 설 >	

개 선 <u>퇴직 직전 2년이내 근무한</u>
실·국·본부·사업소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수주 금지 <u>유착비리 적발업체</u>로 지정된 경우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협상에 의한 계약」기산점 폐지를 통한 우수업체 선정기반 미련**(10월~)

- ㅇ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계약이행과 무관한 평가항목 반영 금지
 - 전문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의 낙찰자 선정 방식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 ㅇ 全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취지에 따라 市 가산점제도 폐지 결정
 - 변별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정량평가 가감점(7점~△7) 전면 폐지
- ㅇ 우수한 업체 선정을 통한 우리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지원

3-3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

2022회계연도 결산 과정을 통해 한해 살림살이를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보완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

□ 결산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o 대상기관: 40개 기관 281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o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2022회계연도 서울시 주요 결산 결과 >

- ▶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조 1,379억원** 발생(전년대비 2조 3,049억원**↓**)
- ▶ 연도말 **기금조성액 7조 2,081억원**, 재정운영결과 8,426억원 흑자(수익-비용) 등

□ 추진내용

- ㅇ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3.6.)
 - 결산검사위원 수를 당초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
- o 결산검사위원 15명 선임(3.10.) 및 결산검사(35일간, 4.11.~5.15.) 실시
 - 검사의견 : 총 74건(시정권고 64건, 제도개선 건의 10건)
- ㅇ 결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사 및 승인 : 제319회 정례회
 - 시정요구 : 총 41건(시정 16건, 개선 7건, 주의 12건, 건의 6건)
 - 결산고시 : 7. 6.(목), 결산서 시누리집 공개 및 대시민 의견수렴 추진
- o 시의회 시정요구(41건) 조치결과 보고 : 제320회 임시회
 - 실국별로 시정요구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
 - 결산검사의견, 시의회 시정요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3. 9. 30.기준)

Uolm	에시청에 지해에 지해로(아)		서 에시됩에 지하여		지체 큰 (0/)	'23년말 집형	생예상액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276,388	222,502	80.5	247,402	89.5		

4. 시유재산의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4-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4-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4-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4-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국가와의 상호점유 재산 정리로 재산관리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대부 일반재산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부 적합성 전면 검토 등 추진

□ 추진내용

- ㅇ 경찰관서 중심으로 국가와의 상호점유재산 일괄교환 추진
 - 국가와의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위한 기재부와 지속 협의(1~6월)
 - ※ 기재부 방문(`23. 2.16), 경찰청 회의 5회(`23. 3.17, 4.6, 4.26, 5.9, 5.18), 과장단 회의(`23. 5.18, 6.15) 등
 - 기재부·경찰청과 주요 교환재산 대상 현장점검 실시, 공부자료·지적현황 조사, 실제 점유현황 확인 등 정밀 검토작업 실시,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7~8월)
 - 기재부와 교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교환가액 등 교환목록 세부 조정(8~9월) <교환대상 재산 목록> ※ 최종 목록, 재산가액은 관리계획 및 감정평가 이후 확정

 취
 득
 강북이리수정수센터, 동대문 동물

 (22필지)
 복지지원센터 등 대부료 납부 국유지,
 ←→

 310억원
 중랑물재생센터 일부



동작경찰서, 노후 치안센터 등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9.19.) 및 시의회 관리계획 제출(10.12.)
 - ※ 관리계획 의결 이후 감정평가(12월),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24년 초) 예정
- o 장기 대부재산 적합성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4~9월)
 - 5년이상 수의계약으로 장기 대부중인 토지 및 건물 등 총 141건 대상
 - 경쟁입찰방식 도입, 대부요율 상향 검토를 위해 서류조사(1차) 및 현장조사(2차)
 - 활용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환원(22건)하거나 활용도 낮은 재산은 실수요자 위주의 매각(119건) 검토
- ㅇ 꼼꼼한 재산 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결산 추진(4월)
 - 2022년말 기준 공유재산 총액은 **135조 1,625억원**으로 전년 124조 2,200억원 대비 **10조 9,425억원 증가(8.81%)**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 완료('23.6.)

	산집행	현황	:	비	예	신
---------	-----	----	---	---	---	---

별첨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교환(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기재부 등)에서 대부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추세로 소유권 확보 필요
- o 국가사용 시유재산은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파출소, 치안센터 등으로 경찰청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상호점유 재산 교환 추진

- o 경찰청과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추진('21~). 기재부 승인요청('22.11)
- o 교환목록 등에 대한 기재부와 의견 차이로 추가 협의 진행('23.2~6.)
 - 기재부 방문 및 경찰청과 회의 5회, 기재부와 과장단 회의 2회 등
- ㅇ 교환대상 재산 지적 현황조사, 현장점검 등 정밀 검토작업('23.7~8.)
- o 기재부, 경찰청과 교환목록 세부 조정('23.8~9.). 공유재산심의회('23.9.19)

□ 교환대상 검토기준 (안)

취득재산 - 22필지

- ① 기획재정부 소관 중 대부료 납부 중인 국유지(15필지)
- ② 향후 대부료 부과 예상되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국유지(7필지)

<mark>처분재산</mark> - 16필지, 34개동

- ①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 중 재건축·리모델링이 시급한 노후 경찰관서
- ② 시책 사업부지로의 활용가능성 있는 재산은 제외

	취득: 310억원 (토지 24,339㎡)			
1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구 용두동 726-1외 1필지		연희
2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서대문구 홍제동 산1-203	1	컨의· (시
3	와우산배수지	마포구 창전동 3-250		
4	낙산아리수올림터	종로구 창신동 산6-58	2	동작
5	성북1배수지	성북구 돈암동 606-820	Δ	(2
6	강북0리수정수센터	남양주시 삼패동 445-3 외 7필지		
7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안국동 175-80	3	구기
8	중랑물재생센터	성동구 용답동 244-5 외 6필지		()

1	연희지구대 등 13개소 (시유지상 시유건물)	서대문구 연희동 86-12 외 12개 경찰관서
2	동작경찰서 등 21개소 (국유지상 시유건물)	동작구 노량진동 72-35 외 20개 경찰관서
3	구기치안센터 1개소 (시유지상 국유건물)	종로구 구기동 120-16

324억원 (토지 3,167㎡, 건물 23,665㎡)

향후일정: 관리계획 의결 후 감정평가(12월), 계약 및 소유권 이전('24년 초)

[※] 최종 목록 및 재산가액은 토지분할, 감정평가 이후 확정

4-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 중장기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총조사 및 공유재산 법령 개선으로 체계적 재산 관리기반 구축

□ 추진내용

- ㅇ 중장기 총괄 재산관리를 위한 '24~'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계획수립을 위한 작성기준 개정 등 부서의견 수렴 및 행정안전부 건의(2월)
 - 관리계획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등 실·국별 담당자 교육 실시(5월)
 - 분야별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한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 수립 및 시 전체 중기계획 수립(7~8월)
 - · 취득(71건, 5조 7,132억원), 처분(11건, 3,920억원), 사용허가대부(1조 1,155억원) 등 총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9월),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 제출 (10월 말)
- o 재산 취득·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관리 강화
 - 기준 상향(대자연면적 330㎡→800㎡)으로 사전적정성 심의 확대('22년 52% → '23년 67%)
 - 심의 안건별 사업설명서 및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시스템으로 통합관리('23년 161건)
- ㅇ 현장 중심의 실질적 시유재산 총조사 시행
 - 현장 중심의 실질적 총조사 확대('22년시범실시→23년부터 권역별 확대) 계획 수립(2월)
 - 노원·도봉·성동 등 동북권 9개구 17,599필지 및 1,031개동 대상 실시(3월~10월)
 - 무단점유, 사용허가,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 700건 현장조사
 - 현장 중심의 실질적 총조사 결과 보고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11월)
- ㅇ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차이로 인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등 4건 행정안전부 제출(6월) 및 시도지사협의회 건의(7월)
- □ 예산집행 현황: 비예산

별첨 '24~'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정의

○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으로 신설

□ 추진근거

-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o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46호, 2023.4.25.)

□ 주요내용

주요 항목	'24~'28 서울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내용
● 중장기시유재산관리정책방향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효율적 시유재산 운용관리를 통한 주요 시책사업 성공 담보 시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체계적·적극적 재산관리로 시유재산 가치 증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② 시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24~'28년도 시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취득(71개 사업 / 5조 7,132억원) 처분(11개 사업 / 3,920억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수입(7,279억원) -'24년 1,310억원(약 3,000건)을 기준으로 연평균 5.26% 수입 증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수입(3,876억원) -'24년 685억원(약 870건)을 기준으로 연평균 6.18% 수입 증가
 시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 '24~'28년 시유재산특례 유형별 운용계획 • 사용료·대부료 감면(20,841억원), 장기사용허가 및 대부(1,244억원) •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3건)
◆ 수입금 징수계획	• '24~'28년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징수 계획 • 2022.12.31.기준 미징수금 477억원(5,690건)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72%인 345억원임 -사용료(23억원, 89%), 대부료(99억원, 79%), 매각대금(63억원, 91%), 변상금(158억원, 62%)

■ 향후일정: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 제출(11.1) 및 행안부 제출('24.1월)

4-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 및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가입으로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 추진내용

- o '안전한 서울' 구축을 위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추진(2~3월)
 - 30년 경과 노후 시유건축물 1,29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유 건축물 법적 점검 기준, 관리 주기 등을 재산관리관별로 실태조사 실시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체점검대상 630개소 중 45개소 안전점검비 지원 (112,300천원)완료, 그 외 시설은 24년 전문가 참여 안전점검 예정 ※ 법적 의무 점검 대상(604개소) 및 매각·철거 예정 대상(60개소) 제외
- o 시유 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안전수선비 지원(4~8월)
 - 긴급사고 예방, 시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의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심사 등을 통해 지워대상 결정
 - 동부여성발전센터 등 18개소에 긴급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비(237,700천원) 지원(건당 20,000천원 내외)
- ㅇ 시유재산 위험관리를 위한 손해보험(공제) 가입 및 관리
 - 건물・공작물 등 시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손해보험(공제) 가입(63,450건)
 - 손해보험 가입 누락방지를 위해 전체 가입대상(63,799건)에 대한 전수조사(5~6월)
 - 가입누락(349건), 가입 및 납부주체 오류사항 등 법령 미준수 사항에 대한 부서 안내 및 23년도 수시분 보험 가입 등 가입 오류사항 보완·정정 시행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지해르(0/)	'23년말 집	집행예상액
사립당	메진연백	집행책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노후건물 안전점검, 수선비 지원	350,000	185,245	52.9	336,000	96
손해보험 가입관리	1,424,081	1,416,680	99.5	1,416,680	99.5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추진사항 보고

□ 현황 및 문제점

- ㅇ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의 0.012%을 출연하는 방식
 - 출연규모('23년 기준) : 전국 124억원, 우리시 26억원(점유율 25%)
- ㅇ 지방세수와 연동하여 연구원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출연금 증가로 잉여금 발생

□ 그 간의 추진내용

- o 행안부 및 지방세연구원에 개선방안 건의 ('22. 12월 ~ '23. 3월)
 - 출연방식 : 보통세 결산액 정률(0.012%) → 매년 사업계획 심사로 출연액 산정
 -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
 - ▶ 이사회 정수 확대를 통한 지자체 참여 제고 및 경영실적 기관평가 포함 등 → 이사회 정수 30명 이내로 확대(광역 8, 기초 8) ※ 서울시는 이사회에 상시 참여
- ㅇ 우리시 개선방안 입법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혐의 추진
 - 행안부 주관 시·도 세정과장 회의 논의('23.2월)
 - 행안부 주관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23.4월 ~ 5월)
 - 재무국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및 논의('23.6월)
 - 세제과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및 시도협, 시군구협과 협의('23.6월)
 -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세연구원 출연비율 규정 폐지 건의('23.7월)
 - 행안부 주관 시·도 세정과장 회의 논의('23.9월)
 - 세제정책팀장, 시도협 및 시군구협과 협의('23.9월)
 - 재무국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및 논의('23. 10월)
- o 행안부는 지방세연구원 '경영실적평가 공시의무' 신설 입법추진 중 ※ '2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23.8월)

□ 향후계획

출연방식 변경 등 연구원 운영 개선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에 해당되므로 타시도와 공조하여 행안부와 지속 협의추진

Ⅳ. 세입 - 세출예산 집행현황

□ 세입현황

(단위: 백만 원, %, '23. 8월말 기준)

그 브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산전망	
T E	세단극	OTEO 4	THE	금액	결산율
합 계	27,721,76	1 20,054,332	18,928,450	27,332,429	98.6
시 서	I 24,112,18	16,498,811	15,472,252	23,715,696	98.4
세 외 수 입	353,20	9 299,153	199,830	360,365	102.0
보 조 금	} 1,51	1,511	1,511	1,511	100.0
보 전 수 입 등	3,254,85	7 3,254,857	3,254,857	3,254,857	100.0

□ 세출현황

(단위: 천 원, %, '23. 9월말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Т Е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합 계	3,255,499,603	1,680,218,641	51.6	3,186,720,134	97.9	
재 무 과	818,782,926	609,692,708	74.5	798,032,316	97.5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91,180	318,133	53.8	557,380	94.3	
2022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76,388	222,502	80.5	247,402	89.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2,585	144,886	84.0	144,886	84.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242,792	162,438	66.9	242,792	10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18,500	68.4	27,037	100.0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0,630	43,980	48.5	53,578	59.1	
쒾약당솀쒾및굥괚欿천	149,218	73,000	48.9	147,600	98.9	
기본경비	1,641,610	1,231,490	75.0	1,502,684	91.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1,486	607,477,779	74.5	795,108,957	97.5	
재산관리과	42,632,736	42,174,770	98.9	42,570,983	99.9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3,997,555	23,827,550	99.3	23,983,555	99.9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82,415	1,578,399	88.6	1,738,274	97.5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35,362	65,650	48.5	131,750	97.3	
기본경비	43,759	29,526	67.5	43,759	100.0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6,673,645	16,673,645	100.0	16,673,645	100.0	
계약심사과	95,777	72,214	75.4	95,777	100.0	
계약심사 업무추진	28,200	21,150	75.0	28,200	100.0	
기본경비	67,577	51,064	75.6	67,577	100.0	

7 8	집행현황			결산전망		
구 분	예산현액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세 제 과	1,795,321,938	580,235,632	32.3	1,795,310,048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9,720	144,461	80.4	179,720	100.0	
마을세무사 운영	12,740	10,433	81.9	12,740	100.0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17,447	1,504,549	99.2	1,506,857	99.3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96,300	50,000	51.9	95,000	98.7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	0.0	1,200	100.0	
기본경비	125,400	104,500	83.3	125,400	100.0	
재정보전금	1,790,745,652	575,778,251	32.2	1,790,745,652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43,438	2,643,438	100.0	2,643,438	100.0	
국고보조금 반환	41	_	0.0	41	100.0	
세 무 과	592,128,397	443,792,468	74.9	544,175,076	91.9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48,176	112,151	45.2	224,151	90.3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907,925	729,783	80.4	789,783	87.0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89,799	19,216	21.4	44,869	5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396,300	71,773	18.1	396,3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59,941	59.9	100,000	10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376,850	1,597	0.4	376,850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50,000	50,000	100.0	50,000	100.0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00,000	24,200	24.2	1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14,096	955,450	49.9	1,912,050	99.9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4,990,425	_	0.0	_	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16,660	455,402	49.7	904,437	98.7	
기본경비	150,085	147,564	98.3	150,085	100.0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081	441,165,391	75.8	539,126,551	92.7	
38세금징수과	6,537,829	4,250,849	65.0	6,535,934	100.0	
고액 체납시세 징수	618,320	486,221	78.6	618,320	100.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54,412	1,214,053	59.1	2,052,517	99.9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3,790,582	2,476,060	65.3	3,790,582	100.0	
기본경비	74,515	74,515	100.0	74,515	100.0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차리결과

_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6 건

○ 조치내역

7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46	43	3	-	-
-11	시정· 처리요구사항	13	12	1	-	-
계 	건 의 사 항	15	13	2	-	-
	기타(자료제출 등)	18	1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재무국 간부 중 특정 학교 출신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시정하기를 바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무과)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5급 이상 전보는 지원부서와 정책부서간 균형과 개인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행정국에서 배치하고 있음 (인사과-55296, 2022.12.20. 2023년 상반기 5급 공무원 전보계획 알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자료를 수정한 사항이 너무 많음. 향후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기초적인 오기는 줄일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전에 교차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제출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국세와 시세 세금추징 실적이 65배 가량 차이나고, 2020년 부과 취소 되는 비율이 약 35% 에 이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 대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보다는 인원 부족, 승진 등의 동기부여 부족, 송사 부담(세무조사팀 자체 수행) 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큼. 세무조사 활동에 대한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구현할 것 (세무과)	 추진사용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실시 (시) 자치구 지도점검 및 누락세원 발굴 교육 (23.1~2월) (자치구) 세무조사 기법 공유 및 추징사례 교육 (23. 5월) 법인 회계프로그램 설명 및 불복사례 교육 (23. 11월 예정) 세무조사 인력강화 추진 자치구 세무공무원 市 파견계획 수립 ('23. 6월) 市 세무조사 업무 파견인력 선발 추진 ('23.7 ~ 9월) 선발인원 : 4명 3개 자치구(동대문, 강서, 성북)의 4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며(9월, 4명 중 1명(강서구)은 9.18일자 파견완료되어 세무조사팀 근무 중이며, 3명은 11월 1일자 발령 예정(자치구 협의완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 추진상황 : 완 료 기본과제 목표는 15건이었으나 □ 추진내용 제출자료 기준으로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4건이었음. 반면. ○ 지방세연구원의 개선 방안 강구 요청('22.11월) 외부 위탁 연구과제는 2021년 - 기본연구과제 확대 및 내실화. 위탁 연구과제 축소 노력 필요 11건에서 올해 32건으로 대폭 ○ 행안부 및 지방세연구원에 제안했던('22, 9월) 출연금 및 증가하였음. 즉.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관평가 등 전반적 운영관련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기본연구과제 수행률이 상당히 낮은 퍾임.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개선 요청할 계획임 위상에 맞는 자체적인 기본과제 연구 수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세제과)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 추진상황 : 완 료 실적이 저조함. 시민들에게 홍보 □ 추진내용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 민간 보유 매체 활용 서울 전역 홍보('22.9월)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 영상노출 : 9,474개(2주간 1개소 100회) (38세금징수과) ○ 자치구 보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22.9월) - 현수막 72개소 가로게시대 게시, 청사 IPTV 11곳·청사 입구 X-배너 설치 ○ 시 보유 매체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및 언론기사 배포('22.9~10월) - 영상(4,340회): 시청사 전광판 1곳 60회, 7개 지하철역 입구 미디어 보드 10곳 680회, 옥외 전광판 100곳 3,600회 - SNS 등 온라인 채널: 서울시 대표 SNS 블로그 내 손안의 서울 등에 노출 ㅇ 체납고지서 뒷면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일러스트 게재 760만부('23.1~계속)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신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시민들이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에 대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서울시 ETAX 이용자 은닉재산신고 접속편의 개선(연중) - 첫 화면 은닉재산 신고아이콘 및 하단 신고센터 배너 노출 ○ 체납고지서 뒷면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일러스트 게재 760만부('23.1~계속) ○ 은닉재산 신고 전용번호(2133-1414) 신설로 이용편의 제공 ○ 120 다산콜센터 은닉재산신고 안내 DB 구축으로 상담편의 제공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재무국에서는 빠르게 공유재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에 재무국은 원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람. 이 외에 공유재산 매입 취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건이 발견됨.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개선해주기를 바람 (재산관리과)	 추진상황 : 완 료 ○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준수하여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재산관리과-1630호('22.9.30.))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내 및 대상여부 검토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검토 - 사업부서의 시의회 사전설명 조율 및 지원 - 전문위원실의 쟁점사항 검토 협조 - 예산담당관 및 전 상임위에 의결결과 공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이 취소·보류·변경되었을 때는 계획안을 제출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취소·보류·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 되면 의회에서 재무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짐. 의회에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이를 시정하기를 바람 (재산관리과)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ㅇ 취소 4건은 당초 취득 안건 2건과 취소를 위해 재상정한 안건 2건으로 모두 심의가 완료(가결)되었음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19년 3차) 및 취소('20년 1차)
 - 서울농장조성 토지건물 매입('16년 1차) 및 취소('18년 2차)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취소, 변경된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므로, 재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매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진행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 요청 공문시행(제출 시)
- 안건 제출부서 대상 서면 및 대면교육 실시(상정 전)
- 의결결과 및 후속처리(취소, 변경 시 재수립) 공문시행(의결 후)
- 사업부서와의 기밀한 소통을 통하여 변경계획이 적기 수립되도록 지원하겠음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 추진상황 : 완 료 하는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난 행감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주길 바람 (재산관리과)

□ 추진내용

- 심의 대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부서에 안내
- ㅇ 연간 일정 수립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홍보중에 있음
- 심의 안건 사업설명서를 사전 배포하여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유도
- ㅇ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 예산담당관 통보 및 협조요청(재산관리과-4520('22.12.14.). 재무국장 전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심의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 의회 예산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시 사업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고, 안건 반려, 부적정, 경고 등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음
- 절차 미준수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미편성 조치 등 요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팀장들에 대하여 초과근무 총량제 상한 권고 시간 이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는 등 무리한 야근을 지양해주시기 바람 (재무과)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재무국 소속 팀장급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 (최대 연 600시간, 월평균 50시간 이내)를 준수하도록 안내 (2022.10.24. 및 2022.12.12.)하였고, 2022년 초과근무시간 확인 결과 초과근무 총량제 상한 권고 시간 준수함 앞으로도 팀장급 초과근무 총량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자문회의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자의적인 운영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세무과)	 추진상황 : 완 료 ○ 부동산 시장의 불규칙적인 거래 상황에 따른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 시장 전망 의견을 추계에 반영해 오고 있음 ○ '23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고,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해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개정('23.3.14.)
○시세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 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포상급 지급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 확인 및 작성을 명확히 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세무과)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조상금 지급근거 관련 자료제출('22. 11. 16.) 현 포상금은 자치구 시세 징수를 독려하는 시상금인 바, 지급 취지에 맞게 자치구 징수활동 관리 ·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지방세연구원의 서울시 연구과제 수행 실적 저조 (2021년 서울시 6건, 행안부 26건) 과도한 출연금의 산출방식 개선 및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할 것.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단기적 7:3)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세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세제과)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지방세연구원)

- '23년 서울시 제출 정책과제 총 13건 수행 중(제안 37건)
- '22년 6건 대비 7건 증가(제안 12건)
- 출연금 산출방식 개선 및 지자체 지도, 감독방안 마련 추진
 - 행안부 및 연구원에 운영 관련 개선 건의('22.12월)
 - · 출연·관리방식 개선
 - : 정률 출연 → 사업계획 지자체심사 출연액 산정
 - · 예산심의위원회 지자체 참여 확대 요청(9명→17명)
 - : 광역8. 기초4. 행안부1 → 광역8. 기초8. 행안부1
 - 이사회 정수 확대 (12명 이내 → 18명 이내) 및 서울시 이사회 상시 참여 요청
 - : 이사장, 원장, 광역4, 기초4 → 이사장, 원장, 광역8, 기초8
 - 연구원 기관운영실적 평가 방식 개선
 - : 절대·단독평가 → 상대·교차검증 평가
 -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지방세연구원 포함 요청
- 출연비율 폐지 등 연구원 개선안에 대해 행안부와 지속 협의
- 행안부 주관 제1차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안건 제출('23.4월)
 ⇒ 중점 개선 과제 채택
- 제2차 중점 개선과제 토론회 논의('23.5월)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출연비율 규정 폐지 건의('23.7월)
- ※ 행안부 입법예고 :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23.8월)

(지방재정 강화)

- 국세 지방세 이양 방안 등 연구용역(4건) 의뢰('22.12.)
-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자문회의 실시('23.3.3.)
 - 참석 : 내부위원 (4명) 및 학계 등 전문가 외부위원(3명)
 - 안건 :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
-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실시('23.9.8.)
 -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지하1층)
 - 참석 : 유태현 부원장 발제 외 외부 전문가 등 토론자 6명
 - 주제 :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방안
-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안 마련 지방세관계법 개정 건의('23.9.26.)
- 세수보전분 현실화 및 유가보조금 목적세 전환 등 행안부 건의

□ 향후계획

(지방세연구원)

 우리시 연구원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타시도와 공조 행안부와 지속 협의 추진

(지방재정 강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 공조, 대정부 협의 지속 추진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체납 지방세 ² 매년 2,000억 으로 책정해 ³ 관행적으로 ³ 아닌가 의심에 적인 목표액 ² 보임 (38세금징수고	먹으로 놓았음 정하 되! 설정여	획일적음. 매년는 것이므로 유동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체납징수 목표액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신장률을 적용하여 세입목표액을 산출 ○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공매 낙찰률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체납자 납부능력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음 ○ 향후에도 징수 여건을 감안하여 능동적인 체납징수 목표를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체납 지방세 7 실질적인 체납 높이기 위해 7 공조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여 (38세금징수고	액 경 아치구 · 지병 주기	}수율을 ¹ 와 }세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가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조사 및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국 최초 경찰청 야간음주 단속시 체납차량 합동단속('22.4월, 6월)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맞춰 시에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22.6월) - 25개 자치구 동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운영번호판 영치 합동단속('22.7월) - 자치구와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22.10월~'23.1월) ○ 향후에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세금 징수 시에 자치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치구에게 징수 권한을 주고 그 성과를 평가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기를 바람 (세무과)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의거, 현재 자치구에 시세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세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세무조사팀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고 장수요원이 장기근무할 수 있고 보람과 성취를 얻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인센티브 제공, 세무조사과 신설을 통한 업무 위상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세무과)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실시 - (시) 자치구 지도점검 및 누락세원 발굴 교육 ('23.1~2월) - (자치구) 세무조사 기법 공유 및 추징사례 교육 ('23. 5월) 법인 회계프로그램 설명 및 불복사례 교육 ('23. 11월 예정) 에무조사 인력강화 추진 - 자치구 세무공무원 市 파견계획 수립 ('23. 6월) - 市 세무조사 업무 파견인력 선발 추진 ('23.7 ~ 9월) ▶ 선발인원 : 4명 - 3개 자치구(동대문, 강서, 성북)의 4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며(9월), 4명 중 1명(강서구)은 9.18일자 파견완료되어 세무조사팀 근무 중이며, 3명은 11월 1일자 발령 예정(자치구 협의완료)

건 의 사 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 | **추진상황** : **추진중** 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전혀 없는 상황임.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감독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람

(세제과)

곀 조 치 과

□ 추진내용

- '23년 서울시 제출 정책과제 총 13건 수행 중(제안 37건)
- '22년 6건 대비 7건 증가(제안 12건)
- 출연금 산출방식 개선 및 지자체 지도, 감독방안 마련 추진
 - 행안부 및 연구원에 운영 관련 개선 건의('22.12월)
 - · 출연·관리방식 개선
 - : 정률 출연 → 사업계획 지자체심사 출연액 산정
 - · 예산심의위원회 지자체 참여 확대 요청(9명→17명)
 - : 광역8. 기초4, 행안부1 → 광역8, 기초8, 행안부1
 - · 이사회 정수 확대 (12명 이내 → 18명 이내) 및 서울시 이사회 상시 참여 요청
 - : 이사장, 원장, 광역4, 기초4 → 이사장, 원장, 광역8, 기초8
 - 연구원 기관운영실적 평가 방식 개선
 - : 절대·단독평가 → 상대·교차검증 평가
 -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지방세연구원 포함 요청
- 출연비율 폐지 등 연구원 개선안에 대해 행안부와 지속 협의
 - 행안부 주관 제1차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안건 제출('23.4월)
 - ⇒ 중점 개선 과제 채택
 - 제2차 중점 개선과제 토론회 논의('23.5월)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출연비율 규정 폐지 건의('23.7월)
 - ※ 행안부 입법예고 :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23.8월)

□ 향후계획

(지방세연구원)

ㅇ 우리시 연구원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시 의견 제출 및 타시도와 공조 행안부와 지속 협의 추진('23. 8월~10월)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및 지급률 상향 행안부 건의('23.1월), 행안부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23.3월) - 포상금 한도 : (현행) 1억원 →(개정) 3억원 - 포상금 지급률 : 구간별 국세와 동일한 지급률로 조정 (현행) 5%, 10%, 15% → (개정) 10%, 15%, 20%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가택조사 후에 개인의 사생활 영상을 과도하게 노출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 체납자 동산압류에 따른 가택 수색시 개인 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었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38세금징수과)	 추진상황 : 완료 추진내용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시 체납자(또는 동거가족)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 직원 교육실시 ('22.9.27.) - 체납자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 및 준수사항 ○ 체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매뉴얼 보완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에 있어서 서울시가 17위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혁신적인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를 추징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나가기를 바람 (38세금징수과)	 추진상황 : 완 료 ○ 징수율 저조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득세 5년 평균 전국 체납규모 중 서울시가 4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국세가 공매처분으로 징수 후 지방소득세는 체납으로 남는 악순환 반복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납세담보제도 적극 활용 - 법인의 주주명부 조사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체납자와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 재산, 타인명의 허위 부동산 조사, 저축은행 및 본점없는 제2금융권, 분양권, 임대차보증금 일제조사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평창동 미술관 건립이 지연 되고 있는데 신경 써주기를 바람 (재산관리과)	 추진나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현황 - '16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 - '19년 2차 변경계획 수립 가결(사업비 증액)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추진현황 - '22. 9월 준공 완료 - '22. 9~12월 장애인경사로 추가공사 완료(민원 해소) - '23. 3월 개관식 개최 예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 예산 편성 사업에 관한 지적이 계속됐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미리 걸러야 한다고 보여짐 (재산관리과)	 추진상황 : 완 료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예산 불용 조치 등 요청 - 기편성 사업은 심의 전 안건 반려, 부적정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보류 등 조치하겠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정합성 유지로 예산 편성 전 사전 차단 ○ 회차별 안건 제출 안내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된 사업만 심의함을 적극 홍보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매년 수십억 원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수급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적정예산이 책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람 (재무과)

조 치 결 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2회계연도 인력운영비는 '21년 대비 1.2%(96억원) 감액하여 편성함
- 이에 따라 '22년 인력운영비 잠정 불용율은 2.5%(196억원)으로
 최근 3년('19~'21년) 평균 불용률 5.3%(403억원)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불용률
′22	792,041,342	772,376,667	19,664,675	97.5%	2.5%
′21	801,642,608	759,476,018	42,136,329	94.7%	5.3%
′20	783,271,311	739,175,169	44,096,142	94.4%	5.6%
′19	734,935,495	700,259,107	34,676,388	95.3%	4.7%

- '23년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0%(236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보수 인상률 1.7% 및 '18년부터 매년 예산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직급보조비 7.1%(14억원), 성과상여금
 5.2%(12억원) 증액 등 정책 상황 및 연도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만을 추가 반영하였음
- 올해에도 면밀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최소화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주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공유재산심의회에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참석	□ 추진상황 : 완료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검토내용
(재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내·외부위원 13명(내부 5, 외부 8) 위원장: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재무국장, 민간위원(호선), 그 외 위원: 위촉 8, 내부 임명(4급이상 공무원) 3 관련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당연직을 규정하고 있고, 시의원 당연직 참여는 별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 제도 정비가 필요 공유재산심의 관련 중요재산(공유재산의 20억원이상)의 추 처분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음. 이에 시의회에서 사전 통제가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조항)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③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우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 추진상황 : 추진중
기준」 신인도 가점 중	□ 추진내용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명칭 변경 과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배점을 상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재무과)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수요 파악을 위하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 변경 및 가점 상향을 비롯하여 전체 신인도 평가항목과 기타 개선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개정안을 수립 중에 있음
	□ 향후계획

거 의 사 항

○ 2021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10.7%. 지방세의 경우 26.9% 초과 🔲 **추진내용** 징수가 발생함, 세입추계의 오류는 본 예산의 건강한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며. 방만한 추경의 원인이 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방기하게 되고. 예상하지 않은 전출금의 발생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산식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계를 결산에 근접하게 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함

(세무과)

제출된 안건 중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부지 사용의 문제 🗌 **추진내용**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시업이 진행됨으로서 이후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 집행 또는 불리한 조건에서 자치구와 소유 및 운영에 대해 협상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유지 및 국유지 등에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착공 전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재산관리과)

치 곀 과 조

□ 추진상황 : 완 료

- o '21년 세입 추계 당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DSR: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 등)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전망되어 세수의 아정적인 징수 목표 달성에 주아점을 두어 추계 하였음. 그러나, 시장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상황 및 시중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30대의 대출을 통한 주택 거래 및 다주택자의 자녀 증여 거래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 '23년부터는 법정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고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해 오차를 최소화하겠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개정('23.3.14.)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 추진상황 : 완 료

- 자치구와 부지사용 문제가 명확히 정리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에 있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전 부서 및 자치구에 공문 발송완료
 - ※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재산관리과-4893호, 2022.12.22.)
- 시유지상에 구유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22.10.17), 구유지 및 국유지 상에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에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의2) 개정 완료('22.10.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함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안 첨부서류 상 공유재산 관련 서류 (재산관리과)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최근 10년간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이 유찰된 현황 (계약심사과)	 추진상황 : 완 료
○ 마을세무사 상담해결 건수 관련 자료 (세제과)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7.)
○ 2020년 세무조사 추정액 대비 취소된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세무과)	□ 추지내용 및 향후 추지계획
○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지적함. 직원 채용리스트에 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이 동일한 날로 표기되어있는 등 자료가 부정확함. 이러한 자료로 행감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제출된 행감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현격하게 떨어짐. 수정된 자료 제출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지방세연구원의 연봉 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에 비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이기에 이름은 제외 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지방세연구원 외부강의 시간 및 외부강의 허가기준 자료 (세제과)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계획에 따른 진행내용 제출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지방세연구원 수입처리계정 사본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사항 및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향후계획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은닉재산센터 운영 관련 언론사 기사 배포현황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업현황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최근 3년간 팀장, 주무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2022년 10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업체(7개) 현황(업체명, 주소, 담당, 계약 사업 등)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세수추계자문회의 설치근거 방침서, 금번 위촉근거 및 회의록, 법적근거에 기반한 운영 방안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6.)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Ⅵ.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1. 지방세제 합리화를	□ 현황	(행정안전부)
위한 자동차세(주행분)	○ 현행 자동차세는 '11년부터 주행세와	
개선 건의	통합하여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성	
(세제과, '23. 9. 26.)	*자동차세 주행분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과세하여 그 중 9,830억원(전국)은 자동차세 (소유분)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보전분으로 나머지 는 운수업체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	
	□ 문제점(자동차세 주행분)	
	세수보전액은 약 20년간 정액(9,830억원)으로 고정되어 확대된 재정수요 미반영	
	- 자동차시장 확대(20년간 2배) 및 승용자동차의 대형화 등 세정여건 변화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임에도 보통세로 되어, 재정의 추가부담 초래	
	- 현재, 조정교부금(26%) 및 교육청전출금(10%)으로 별도 추가지출(5년 평균 약 1,150억원)	
	□ 건의내용	
	이 세수보전액 현실화(9,830억원→약 4.7조원)	
	- 시민의 유류세 부담이 없도록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 증가분만큼 교통세(국세) 조정 ※ 세수 효과 : 전국 + 3조 7,170억원 × 14.62% (서울시 안분율) = 서울시 + 5,434억원 확충 ○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목적세 전환	
	- 조정교부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보통세 세입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정 부담 완화 ※ 연간 서울시 약 1,150억원 절감 효과	
	□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및 제133조 등	